

즉시항고장

항고인(피신청인)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항고인(신청인)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당사자 사이의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기○○○호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인은 불복하므로 즉시 항고합니다.

원재판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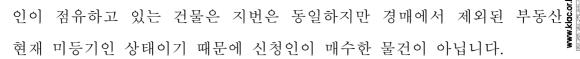
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항 고 취 지

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.

항 고 이 유

1. 신청인은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경○○○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정당한 소유자임에 틀림없으나, 항고



2. 따라서 항고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제 1호증의 1 경매된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사진

1. 갑제 1호증의 2 경매된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사진

1. 갑제 1호증의 3 항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사진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항고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항고인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집행법원	제출기간	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· 장 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136조제5항
	 재항고(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, 민사소송법 제442조)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이므로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재항고하여야 함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 		
불복절차	용되므로,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(항고)법원에		
및 기간	가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,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심(항고)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4.9.13.자 2004마505		
	결정, 민사집행법 제15조)		
비용	・인지액 : 2,000원(로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
	·송달료 : 당사자수(항고인, 상대방)×3,700원(우편료)×5회분		
기 타	• 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마쳐진 경우라면 항고의 이익이		
	없게 됨(대법원	2005. 11. 14.자 20	05마950 결정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